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과 업계의 대응방안

나근배 / 한국프리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

1.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5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이 고시되었다.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합성수지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한다. 감량화라 함은 감량·회수·재활용·처리를 말하며 당초 통상 산업부에서는 재활용을 통한 감량화 지침으로 주장할 정도로 실제내용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라 하겠다.

어찌 되었던지 이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이 우리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될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지침에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식품업체, 잡화류 및 종합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이들 업체는 내년 6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회수체계를 구축하여 비용을 부담한 제품에는 재활용 마크를 부착시키고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재활용 품으로 분리수집한다.

이와 같이 관련업계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주게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95년 2월 6일 개정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제4항에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이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에 적합하도록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약 10개월동안 환경부가 통상산업부와 협의하여 발표한 규정이다.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1992. 12. 8 제정</p>	<p>-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p>
---	--

<p>「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4항 1993. 8. 17 제정, 1995. 2. 6 개정</p>	<p>- 별표에 규정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에 적합하도록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p>
--	--

<p>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지침 1996. 7. 25 제정</p>	
---	--

가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량을 감축시키게 하는 제도이다.

“실제적으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이다.”

감량화라는 용어의 정의에 재활용이 포함되었으며 (제2조) 더욱이 관련 업계가 재활용 단체를 결성하여 회수·재활용할 경우 별도의 목표율을 부여하여 (제10조) 이행토록 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도 재활용단체를 적극 협력토록(제11조, 제14조)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라 하겠다.

3. 지침의 특징

“본 지침은 모든 포장폐기물 중 합성수지 재질만을 대상으로 한것으로 관련업계에 압력을 가하는 제도이다.”

포장 폐기물중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이 극히 저조하자 궁여지책으로 발표된 제도이다. 본 지침은 합성수지 재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합성수지 재질을 종이나 다른 재질로 대체토록 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성이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산림자원 훼손, 물류비용 추가부담 등 경제적, 환경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발생되어 당초 법에서 추구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목적에 상반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통상산업부에서는 「재활용을 통한 감량화 지침」으로 계속 주장하였으나 관철이 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관련업계

“대상사업자를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제조자로 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플라스틱 업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품류, 잡화류, 종합제품의 제조자는 합성수지 포장재 이외에도 종이 팩, 캔, 유리 등 매우 다양한 재질을 사용한다. 많은 재질 중 합성수지 재질만 회수 재활용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인형, 완구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기 본연의 사업도 어려운 실정인데 자기가 사용한 포장재까지 회수·재활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과밭침을 사용하는 농가에서 사과밭침 한가지만 전국을 순회하며 회수·재활용할 수 없다.

회수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배출·수집하여야 하며 재생원료 사용, 재생



기술 개발, 재생제품 판매까지 연계되어야 하므로 전문성을 가진 플라스틱 업계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결국 감량화 시행시 가장먼저 영향을 받게되는 플라스틱 업계가 주축이 되어 전문성을 가지고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비용부담 마크제도가 처음으로 시도되며 재활용 체계구축의 선두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종이, 유리, 캔, 플라스틱, 고무 등 모든 재질의 폐기물은 재활용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재활용 비용이 소요된다. 재생제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제원자재를 사용한 제품과 재생제품의 가격차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건비 상승과 희수를 위한 물류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재생품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예치금 성격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예치금을 부담도록 하는 것보다 업계가 자율적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DSD와 같은 마크를 활용하는 것이다. (제14조 2항)

즉, 희수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여 의무를 이행한 업체의 제품에 일정모양의 마크를 사용케 하고 지방자치 단체는 이러한 마크가 있는 제품만을 재활용품으로 수집하여 관련 재활용단체에 인계하는 제도이다. 마크가 없는 제품은 자연히 수집에서 제외되며 사용을 기피하게 된다. 독일이 성공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포장폐기물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이며 합성수지 재질을 선두로 하여 이러한 마크제도가 전품목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적용대상 합성수지 포장재의 수급동향

종 류	대상포장	생 산		수 요		재 질
		업체수	수량(톤)	업체수	수량(톤)	
발포제품류	받침류, 라면컵, 트레이 종합제품 등	280	68,600	101,640	68,600	PS발포
비발포제품류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세제류 화장품, 완구, 인형 등	180	32,900	5,050	32,900	PS, PVC PP, PE 등
계		460	101,500	106,690	101,500	

(표 2) 대상포장재의 회수·재활용·처리 및 감량화 추진 연차별 목표율

'98.1.1부터		2000.1.1부터		2002.2.1부터	
대상제품 및 포장	목표율	대상제품 및 포장	목표율	대상제품 및 포장	목표율
1. 식품류중 계란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계란반침(난좌) 또는 팩	50%이상	<좌동>	60%이상		
2. 식품류제품중 과일 (사과와 배에 한한다)제품포장에 사용되는 과일반침(난좌)	5%이상	<좌동>	15%이상		
3. 식품류제품중 컵라면제품 포장에 사용되는 컵용기	-	<좌동>	10%이상		
4. 잡화류제품중 화장품류 (세제류포함), 완구·인형류의 제품과 종합제품으로서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 (세제류포함)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류	30%이상	<좌동>	50%이상	포장규칙 별 표에 규정된 제품에 사용 되는 대상포장재	60%이상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대상으로 한 지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국가폐기율 정책 전환의 일환이다.”

포장재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대부분 합성수지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 10만이상의 사업자가 감량화에 적용된다(표 1 참조). 해당 사업자는 '97년 6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단체와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에 대한 회수약정을 체결토록 되어있다(제11조).

이와같이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지침」이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인형, 완구, 종합제품 등 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체와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가히 법국가적 정책이라 하겠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벌써부터 청소과 내에 별도의 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4. 결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연차별 감량화지침」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라 하겠으며 활용여부는 업계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용기 생산자가 주축이 되고 원료 메이커, 용기 사용자가 협력하여 비용부담 마크제를 도입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재활용 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본 지침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ko]

PC방 깔깔깔

■■■ 따뜻한 말

한 신부가 올고 있는 여지를 보았다. 그녀는 신부에게 심리하게 '신부님,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신부는 '난로, 군밤, 군고구마, 은돌방, 보온 도시락, 모피코트 ...'

■■■ 예술이나, 외설이나

비디오 작품이 예술인지 외설인지 구별하는 방법

1. 비디오를 본 뒤 감동으로 비디오를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지면 ? 예술
2. 비디오를 본 뒤 감동으로 비디오의 주요 장면만 다시 보고 싶어지면 ? 외설

■■■ 독립군 얘기

독립군 맹구와 영구가 일본군에 불집혀 교수형을被执行했다. 절벽 위에서 있는 나무에 빗물을 매고 먼저 맹구 목에 걸었다. 일본군이 그를 빌로 걸어쳤으나 빗들이 특 끊어지는 바람에 맹구는 밀의 강물을 밀어졌다. 맹구는 해양에서 무사히 돌아났다.

이 광경을 보던 영구가 덜덜 떨며 애aped했다. '저기, 저는 헤엄을 못합니다. 끊어지지 않게 꼭 끓여주세요.'

■■■ 유능한 변호사

젊은 미국 소령이 큰 호텔 로비에서 일몰으로 여지를 쫓아 다니다 현병에게 불작했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이런 육군 규정을 이용해 그를 석방시켰다. '장교가 운동을 할 때 거기에 알맞는 차림을 했다면 정복차림이 아니어도 무방하다.'